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2 2023년 7월 3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이새날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새날 의원)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위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운 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위원회 회의일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 나.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소규모학교와 각종학교 선출관리위원회 운영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위탁형 각종학교 운영위원의 임기를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 도록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마. 위탁형 각종학교 학부모위원 임기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바. 연간 회의 개최 의무규정을 학교별 상황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6조)
- 사. 기타 상위법령의 조항 및 자구를 정정함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이새날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812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 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국회는 지난 2022 10.18.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을 개정 하여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장하여, 각 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각종학교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이하 '정규학교')로 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서, 정규학교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 으며,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특성상 학생 및 시설 규모 등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표-1] 서울시내 각종학교 현황

연번	구분	학교명	학생수(명)	운영형태	학운위 설치현황
1	공립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108	대안학교	미설치
2	공립	서울산업정보학교	126	위탁(직업)	미설치
3	공립	아현산업정보학교	448	위탁(직업)	미설치
4	공립	종로산업정보학교	302	위탁(직업)	미설치
5	공립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178	위탁(직업)	미설치
6	공립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132	위탁(직업)	미설치
7	공립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143	위탁(직업)	미설치
8	공립	오디세이학교	82	위탁(고1)	미설치
9	사립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114	대안학교	미설치
10	사립	여명학교	64	대안학교	설치
11	사립	지구촌학교	87	대안학교	설치
12	사립	한국삼육중학교	478	각종학교	설치
13	사립	예원학교	887	각종학교	설치
14	사립	선화예술중학교	811	각종학교	설치
15	국립	국립전통예술중학교	214	각종학교	설치
16	국립	국립국악중학교	309	각종학교	설치

- 그러나 일부 각종학교의 경우 학비가 연간 1,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등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국회에서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을 개정하여¹⁾, 각종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 록 하였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각 종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나.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31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안 제3조제3항은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와 '위탁형 각종학교'의 경우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의 위원 구성비율을 위원별 차등없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로 균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학생 수에 따라(영 제58조 제1항 각호²⁾) 5명에서 15명의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1) 「}초·중등교육법」[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u>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u>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²⁾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 회"라 한다)중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u>각종학교</u>(이하 제62조까지 "국 ·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 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2023. 4. 11.>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구성 비율 역시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중 '학생 수가 100명 미만 인 학교'와 '위탁형 각종학교'의 경우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바³⁾, 동 조례안의 규정과 같이 구성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 더욱이 현재 서울시에는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생수 100명 미만 공립 각종학교가 없고, 위탁형 각종학교 7개교의 경우에도 단기간의 위탁과정만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정규학교와 같은 학부모 구성비율 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동 조례안과 같은 위원 구성비율은 위원별 차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교의 여건에 따른 위원 구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실성 을 반영함으로써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독려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위원구성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수

78	인원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구분	비율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학부모	20%~40%	1	2	2	2		3	2	3	3	4	3	4	4	4	3	4
교원	20%~40%	2	2	1	2	ᄼᆸᆌ	3	3	2	3	2	3	2	3	4	4	4
지역	20%~40%	2	1	2	2	(불가)	2	3	3	3	4	4	4	4	3	4	4
합계	100%		5명		6명		1	8명		9명	1	10명	3	1	115	1	12명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13인이상 15인이내

³⁾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③(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23. 4. 11.>

^{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 다음으로 안 제5조제3항은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와 위탁형 각종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 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 현재 상위법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당연 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만 규정되어 있을 뿐(영 제59조4)) 위원의 선출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영 제62조5)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현행 조례 제5조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정규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해 각각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위탁형 각종학교의 경우 단기간 위탁과정을 통해 각종학교로의 학생 전출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학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각종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학부모 위원의 선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과 같이 부득이하게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학교

⁴⁾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후단 생략) ③ (생 략)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5)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6조제6항에서는 위탁형 각종학교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1년 이상 2년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위탁형 각종학교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 위원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16조제3항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연 8회 이상 의무 개최를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조례에 의무적으로 규정한 곳은 서울이 유일한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거나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연 8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 및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따라서 안 제16조제3항은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학교운영위 원회 개최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최근 3년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학교급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초	9.1회	7.9회	8.9회
중	8.5회	7.7호	9.0회
고	8.6회	7.8호	8.8회
특수	8.2회	7.7호	7.6회
합계	8.8회	7.8회	8.8회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약칭(안 제1조~안 제3조) 및 관련법 령의 근거 조항의 정정(안 제6조제1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함으로 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6.8.)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58조제1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8조제4항"을 "영 제58조제4항제1호"로, "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제4조제3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와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선출관리위원회 정수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단서 중"「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을"「유아교육법」제1 9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위원의 임기를 1년 이상 2년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 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졸업"을 "졸업·수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졸업한"을 "졸업·수료한"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궐위된"을 "공석이 생겼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개의하며"를 "회의를 시작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립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

②·③ (생 략)

회를 구성 · 운영한다.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u>영 제5</u> 8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 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 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 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 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초·중등교육법」(이하"법" 이라 한다)제30조제1항에 따라 학 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u>「초・</u> 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제58조제1항---- 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 수로 한다.

② 영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이 경우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② (생략)

② <u>영 제58조제4항제1호</u>
<u>초등학교·중학교·고</u>
등학교 및 특수학교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 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위 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 되,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20 이상 1 00분의 40 이하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 분의 40 이하
-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 분의 40 이하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u>전일</u>까지 선출한다.

(3) -

④・⑤ (생략)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② (생략)

<신 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의 유치원 교원위원 및학부모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따른다.

<u>전날</u>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10
0명 미만인 학교와 모든 학생을 다
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
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
에 선출관리위원회 정수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u>「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u>
<u> 6항</u>
.

2 ~	⑤ (생	략)
<u><신</u>	설>	

-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생략)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u>졸업</u>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u>졸업한</u>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 5. (생략)
 - ②・③ (생 략)
-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 ⑤ (생 략)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u>궐위된</u>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생 략)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
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
영하는 각종학교는 위원의 임기를
1년 이상 2년의 범위에서 규정으
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1. (현행과 같음)
2 <u>졸업·</u>
<u> 수료</u>
<u>졸업·수료한</u>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6
<u>공석이 생겼을</u>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현행과 같
<u>ㅇ</u>)

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 제 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며</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u></u>
렇지 않다.
③
<u>다만, 회의는 각 학교 실</u>
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의를 시작하며